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5,124,042	8,553,721
일반회계	235,220,799	7,056,624
특별회계	49,903,243	1,497,097
기타특별회계	49,903,243	1,497,0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24,989	117,750
수질개선특별회계	10,920,694	327,621
의료보호특별회계	362,113	10,863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4,015,698	120,471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4,811,292	144,339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6,757,441	202,723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19,111,016	573,3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44,0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